|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1982년 8월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비준  **제4장** 등록상표의 갱신, 변경 및 사용허가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  **제6장** 상표의 사용 관리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  **제8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며 생산 경영자가 상품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 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평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표 쟁의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 상표국의 허가를 받고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로서 여기에는 상품 상표, 서비스 상표 및 집단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향유하며 법률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집단상표라 함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하고 당해 조직 회원의 상사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조직에서의 사용자의 회원자격을 설명하는 표식을 말한다.  본 법에서 증명상표라 함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능력을 가진 조직이 소유하고 당해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징을 증명하는 표식을 말한다.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특수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 활동 중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본 법의 상품 상표 관련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한다.  **제5조** 2명 이상 자연인, 2개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공동으로 동일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당해 상표의 전용권을 공동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하며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제7조** 상표 등록 출원 및 상표 사용 시 반드시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표 사용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사기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그 어떤 문자, 도안, 부호, 수치, 삼차원 표식 및 칼라조합, 오디오 및 상기 요소의 조합을 포함한 표식은 모두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제9조** 등록 출원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구비하여 식별하기 쉬워야 하는 동시에 타인의 우선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되어서는 아니된다.  상표 등록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 표식을 명시할 권한이 있다.  **제10조** 하기 표식은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1）중화인민공화국 국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대 휘장, 군가,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중앙 국가기관의 명칭, 표식, 소재지 특정 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성 건축물의 명칭, 도안과 동일한 것  （2）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것은 제외  （3）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조직이 동의하였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제외  （4）통제 실시, 정부측의 보증 표식 또는 검사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수권을 받은 것은 제외  （5） “적십자”, “적신월(紅新月)”의 명칭, 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6）민족 차별시 성격을 띤 것  （7）사기성을 띠었으며 상품의 품질 등 특성 혹은 생산지에 대해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것  （8）사회주의 도덕과 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현급 이상 행정구획 지명 또는 공중이 숙지하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지명에 기타 함의가 있거나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미 등록 사용하는 지명 상표는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하기 표식은 상표로 등록하지 못한다.  （1）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안, 유형만 있는 것  （2）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징만 표시한 것  （3）기타 현저한 특징이 결여한 것.  전항에 나열한 표식이 사용을 거쳐 현저한 특징을 취득한 동시에 식별하기 쉬울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단순히 상품 자체의 성격으로 조성한 형태, 기술효과를 얻기 위한 상품 형태 또는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의 삼차원 표식의 상표 출원은 등록하지 못한다.  **제13조**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는 상표권자가 해당 권익이 침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법에 근거하여 유명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유명상표를 복제, 모조 또는 번역하여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타인이 중국에서 이미 등록한 유명상표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당해 유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유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안건 처리시 인정이 필요한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 유명상표의 인정은 하기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1）당해 상표에 대한 관련 공중의 숙지정도  （2）당해 상표의 연속 사용기간  （3）당해 상표의 임의의 홍보 지속기간, 정도 및 지리범위  （4）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당해 유명상표의 기타 요소.  상표등록 심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표 위법 안건 처리 과정 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은 안건 심사 및 처리 수요에 따라 유명상표 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 쟁의 처리 과정 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평의위원회는 안건 처리의 수요에 따라 유명상표 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 민사 및 행정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과정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안건 심사처리 수요에 따라 유명상표 상황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생산 경영자는 “유명상표” 문구를 상품 및 상품 포장 또는 용기, 광고 홍보, 전시 또는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수권없이 자기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신청을 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경우, 신청인이 당해 타인과 전항 규정이외의 계약, 업무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있어 타인 상표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6조** 상표에 상품의 지리표식을 명시하였지만 당해 상품 제조원이 당해 표식에서 명시한 지역이 아니고 공중의 오인을 조성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사용을 금지한다. 단 이미 선의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다.  전항에서 지리표식이라 함은 모 상품의 제조원이 모 지역이고 당해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당해 지역의 자연요소나 인문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표식을 말한다.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는 그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상표대리기구는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피대리인의 위탁에 근거하여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대리 과정 중 알게 된 피대리인의 상업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본 법에서 규정한 등록 불가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구는 반드시 명확히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상표대리기구는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본 법 제15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경우, 당해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상표대리기구는 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외 기타 상표 등록을 출원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상표대리 산업조직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 가입 조건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산업 자율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표대리 산업조직은 가입한 회원 및 회원 징계상황에 대해 즉시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21조** 상표 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이 확립한 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구체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장 상표 등록의 출원**  **제22조** 상표등록 출원인은 소정 상품 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종류와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은 한번의 신청을 통해 부동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를 등록 출원할 수 있다.  상표등록 출원 등 관련 문서는 서면 또는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상표가 지정 사용범위 이외의 상품에 대해 상표 전용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의 표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다시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상표등록 출원인이 외국에서 처음 상표등록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서 동일 상품에 동일 상표의 등록출원을 제출할 경우,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승인하는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 출원시에 서면 성명을 제출하는 동시에 3개월 내에 제1차 상표 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상표 등록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전시한 상품에 처음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상품을 전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당해 상표의 등록 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 등록출원 제출시에 서면 성명을 제출하는 동시에 3개월 내에 그 상품을 전시한 전시회 명칭, 전시 상품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 전시일자 등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도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상표등록 출원시에 신고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자료는 진실, 정확, 완벽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비준**  **제28조**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초보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초보 심사결과를 공고한다.  **제29조** 심사과정 중 상표국에서 상표 등록 출원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설명 또는 수정을 아니한 경우 상표국이 심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0조** 등록 출원 상표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 종류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이미 등록하였거나 초보 심사를 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1조** 2인 또는 2인 이상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 종류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을 경우 초보 심사를 하여 우선 출원 상표를 공고하며 같은 날에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초보 심사를 하여 우선 사용 상표를 공고하며 기타 출원은 기각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이 확보하고 있는 우선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을 구비한 상표를 부당 수단으로 앞질러 출원하지 못한다.  **제33조** 초보 심사를 한 상표에 대하여는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행권리자,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두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제34조**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내에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  초보 심사를 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표국은 이의 신청인과 출원인의 사실과 이유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조사 확인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등록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이 등록을 허가한 경우 상표등록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이의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본 법 제44조,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 무효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재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출원인이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 신청인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가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 포함된 우선 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현재 심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이 현재 처리하는 다른 한 안건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 소멸 후 응당 심사 절차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 기각 결정, 등록 불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 기각 결정, 등록 불허 결정 또는 재심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 결과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등록을 허가할 경우, 상표등록 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시간은 초보 심사 공고를 발표한 후 3개월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당해 상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등록 허가 결정을 하기전까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당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식을 사용한 행위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 동 사용자의 악의로 인하여 상표 등록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  **제37조** 상표등록 출원과 상표 재심 신청은 즉시에 심사하여야 한다.  **제38조** 상표등록 출원인 또는 등록자가 상표 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상의 명확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그 직권 범위 내에서 시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의 오류 시정은 상표 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가**  **제39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 허가 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0조** 등록상표를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12개월 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매회 갱신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지난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연장기간이 만료되어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상표국은 갱신 등록 허가한 상표에 대해 공고한다.  **제41조** 등록상표의 경우 등록자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아울러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자가 동일 종류 상품에 등록한 유사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도 같이 양도해야 한다.  혼동을 초래하기 쉽거나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도에 대해 상표국은 비준을 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한다.  등록상표의 양도 허가 후에는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한 날로부터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  **제43조** 상표등록자는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인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피허가인의 상품의 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경우, 허가인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상표국에 보고하여 비안하여야 하며 상표국에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표사용 허가에 대해 비안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  **제44조**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사기성 수단으로, 기타 부당 수단으로 등록 허가를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당해 등록상표가 무효함을 선고한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상표 무효 선고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내에 결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신청할 경우,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기한내 답변을 제출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내에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 선고를 재정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절차의 상대편 당사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내 선행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등록한 경우 유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표평의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신고 신청을 접수한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기한내에 답변을 제출한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 선고를 결정하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절차의 상대편 당사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의위원회가 전항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포함된 우선 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현재 심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이 현재 처리하는 다른 한 안건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 소멸 후 응당 심사 절차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46조** 법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무효 선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심 결정,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 재정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국의 결정,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심 결정, 재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본 법 제44조,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를 선고 받은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하며 당해 등록상표 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 또는 재정 관련하여 무효 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이 진행 및 집행한 상표 권리 침해 안건의 판결, 재정, 조정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실행 및 집행한 상표 권리 침해 안건의 처리 결정, 또는 이미 이행한 상표 양도, 사용허가 계약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단, 상표등록자의 악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전항 규정에 근거하여 상표 권리 침해 배상금, 상표양도금, 상표사용비를 반환하지 않는것이 명백히 공평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응당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6장 상표의 사용 관리**  **제48조** 본 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문서, 또는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함을 말하며 상품 출처를 분별하는데 쓰이는 행위를 뜻한다.  **제49조**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 중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등록인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그 동록상표를 취소한다.  등록상표가 당해 지정 사용 상품의 통용 명칭으로 되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 무효 선고 또는 기간 만료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소, 무효 선고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본 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등록출원을 명하며 위법경영 소득액이 5만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 소득액의 20%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 소득액이 5만위안 미만일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여 사용하였거나 또는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본 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위법경영 소득액이 5만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 소득액의 20%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경영 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경영 소득액이 5만위안 미만일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 본 법 제14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만위안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취소 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의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내에 결정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일정 연기한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3개월 연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5조** 법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상표 취소 결정, 재심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이를 공고하며 당해 등록상표 전용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정지된다.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  **제56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 허가 상표와 지정 사용 상품에 한한다  **제57조** 하기 각호의 행위는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상표 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 종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2）상표 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 종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또는 유사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  （3）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4）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하였거나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등록상표 표식을 판매하였을 경우  （5）상표 등록자의 동의없이 그 등록상표를 대체한 동시에 당해 대체 상표 상품을 시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6）고의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를 실시하도록 도와주었을 경우  （7）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한 유명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고 부당경쟁 행위를 조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59조** 등록상표 중에 포함된 동 상품의 통용 명칭, 도안, 유형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한 것, 또는 지명에 대하여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삼차원 표식 등록상표 중 포함된 상품 자체의 성격으로 조성한 형태, 기술효과를 얻기 위한 상품 형태 또는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에 대해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상표등록자가 상표등록 출원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자보다 먼저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등록 전용권자는 당해 사용자가 원래 사용범위내에서 계속 당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으나 적당한 구별 표식을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본 법 제57조에 나열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중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미결일 경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도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에서 권리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침해 행위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하고 권리 침해 상품과 권리 침해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였거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몰수, 소각한다, 동시에 위법경영 소득이 5만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경영 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경영 소득이 5만위안 미만일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내에 2회 이상의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경위가 존재할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였거나 당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판매를 정지할 것을 명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수 관련 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처리 책임을 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조정협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62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미 취득한 불법 혐의 증거 또는 고발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혐의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관련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관련 상황 조사  （2）권리 침해 활동과 관련한 당사자의 계약, 전용전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 사열, 복제  （3）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활동 종사에 관계되는 당사자의 장소 현장 조사  （4）권리 침해 활동과 관련한 물품 검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한 차압 또는 압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그를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저애하지 못한다.  상표 침해 안건 조사처리 과정중에서 상표권 소속에 대해 쟁의가 존재하거나 권리자가 동시에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안건의 조사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 소멸 후 응당 심사 절차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63조**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수는 권리자가 피침해기간에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 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그 권리 침해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허가 사용비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배상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배상액수를 확정한다. 배상액수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의 제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최선을 다하여 증거 제시를 하였으나 권리 침해 행위 관련 장부, 자료를 권리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을 경우, 권리 침해자한테 권리 침해 관련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리 침해자가 장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조작한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 권리 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그 권리 침해로 취득한 이익, 등록상표 허가사용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 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64조**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권리 침해자는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변을 제출할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 전용권자한테 과거 3년내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적으로 사용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과거 3년내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타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권리 침해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하였거나 당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동시에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5조**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타인이 그 등록상표 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현재 실시하거나 또는 곧 실시하게 되고 만약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법에 근거하여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 권리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증거가 멸실될 수 있거나 사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 상표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 종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표식을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등록상표 표식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등록상표의 모조 상품임을 분명히 알면서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상표대리기구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분을 주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을 진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주는 동시에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상표 사무 처리 과정 중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법률문서, 인감, 싸인을 사용한 경우  （2）기타 상표대리기구를 비방하는 등 수단으로 상표대리 업무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본 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상표대리기구가 전항에서 나열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용기록에 기재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는 당해 상표대리기구가 처리하는 상표대리업무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를 공고한다.  상표대리기구가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위탁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상표대리 산업조직은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징계를 부여한다.  **제69조**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집법하고 청렴 자율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 그리고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은 상표대리업무와 상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0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내부 감독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무를 책임진 국가기관 업무직원의 법률, 행정법규 집행 및 규율 준수 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제71조**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법을 어기고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 사항을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부당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8장 부 칙**  **제72조** 등록상표 출원과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 요금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3조** 본 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상표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하며 기타 상표 관리 관련 규정이 본 법과 저촉될 경우에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1982年8月23日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通过 根据1993年2月2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的决定》第一次修正 根据2001年10月27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的决定》第二次修正 根据2013年8月30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的决定》第三次修正）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商标注册的申请  **第三章** 商标注册的审查和核准  **第四章** 注册商标的续展、变更、转让和使用许可  **第五章** 注册商标的无效宣告  **第六章** 商标使用的管理  **第七章** 注册商标专用权的保护  **第八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商标管理，保护商标专用权，促使生产、经营者保证商品和服务质量，维护商标信誉，以保障消费者和生产、经营者的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特制定本法。  **第二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标局主管全国商标注册和管理的工作。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设立商标评审委员会，负责处理商标争议事宜。  **第三条** 经商标局核准注册的商标为注册商标，包括商品商标、服务商标和集体商标、证明商标；商标注册人享有商标专用权，受法律保护。  本法所称集体商标，是指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名义注册，供该组织成员在商事活动中使用，以表明使用者在该组织中的成员资格的标志。  本法所称证明商标，是指由对某种商品或者服务具有监督能力的组织所控制，而由该组织以外的单位或者个人使用于其商品或者服务，用以证明该商品或者服务的原产地、原料、制造方法、质量或者其他特定品质的标志。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的特殊事项，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规定。  **第四条** 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在生产经营活动中，对其商品或者服务需要取得商标专用权的，应当向商标局申请商标注册。  本法有关商品商标的规定，适用于服务商标。  **第五条** 两个以上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共同向商标局申请注册同一商标，共同享有和行使该商标专用权。  **第六条** 法律、行政法规规定必须使用注册商标的商品，必须申请商标注册，未经核准注册的，不得在市场销售。  **第七条** 申请注册和使用商标，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  商标使用人应当对其使用商标的商品质量负责。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通过商标管理，制止欺骗消费者的行为。  **第八条** 任何能够将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的商品与他人的商品区别开的标志，包括文字、图形、字母、数字、三维标志、颜色组合和声音等，以及上述要素的组合，均可以作为商标申请注册。  **第九条** 申请注册的商标，应当有显著特征，便于识别，并不得与他人在先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  商标注册人有权标明“注册商标”或者注册标记。  **第十条** 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使用：  （一）同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国歌、军旗、军徽、军歌、勋章等相同或者近似的，以及同中央国家机关的名称、标志、所在地特定地点的名称或者标志性建筑物的名称、图形相同的；  （二）同外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军旗等相同或者近似的，但经该国政府同意的除外；  （三）同政府间国际组织的名称、旗帜、徽记等相同或者近似的，但经该组织同意或者不易误导公众的除外；  （四）与表明实施控制、予以保证的官方标志、检验印记相同或者近似的，但经授权的除外；  （五）同“红十字”、“红新月”的名称、标志相同或者近似的；  （六）带有民族歧视性的；  （七）带有欺骗性，容易使公众对商品的质量等特点或者产地产生误认的；  （八）有害于社会主义道德风尚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  县级以上行政区划的地名或者公众知晓的外国地名，不得作为商标。但是，地名具有其他含义或者作为集体商标、证明商标组成部分的除外；已经注册的使用地名的商标继续有效。  **第十一条** 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注册：  （一）仅有本商品的通用名称、图形、型号的；  （二）仅直接表示商品的质量、主要原料、功能、用途、重量、数量及其他特点的；  （三）其他缺乏显著特征的。  前款所列标志经过使用取得显著特征，并便于识别的，可以作为商标注册。  **第十二条** 以三维标志申请注册商标的，仅由商品自身的性质产生的形状、为获得技术效果而需有的商品形状或者使商品具有实质性价值的形状，不得注册。  **第十三条** 为相关公众所熟知的商标，持有人认为其权利受到侵害时，可以依照本法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  就相同或者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是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未在中国注册的驰名商标，容易导致混淆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不相同或者不相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是复制、摹仿或者翻译他人已经在中国注册的驰名商标，误导公众，致使该驰名商标注册人的利益可能受到损害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第十四条** 驰名商标应当根据当事人的请求，作为处理涉及商标案件需要认定的事实进行认定。认定驰名商标应当考虑下列因素：  （一）相关公众对该商标的知晓程度；  （二）该商标使用的持续时间；  （三）该商标的任何宣传工作的持续时间、程度和地理范围；  （四）该商标作为驰名商标受保护的记录；  （五）该商标驰名的其他因素。  在商标注册审查、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商标违法案件过程中，当事人依照本法第十三条规定主张权利的，商标局根据审查、处理案件的需要，可以对商标驰名情况作出认定。  在商标争议处理过程中，当事人依照本法第十三条规定主张权利的，商标评审委员会根据处理案件的需要，可以对商标驰名情况作出认定。  在商标民事、行政案件审理过程中，当事人依照本法第十三条规定主张权利的，最高人民法院指定的人民法院根据审理案件的需要，可以对商标驰名情况作出认定。  生产、经营者不得将“驰名商标”字样用于商品、商品包装或者容器上，或者用于广告宣传、展览以及其他商业活动中。  **第十五条** 未经授权，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册，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申请注册的商标与他人在先使用的未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申请人与该他人具有前款规定以外的合同、业务往来关系或者其他关系而明知该他人商标存在，该他人提出异议的，不予注册。  **第十六条** 商标中有商品的地理标志，而该商品并非来源于该标志所标示的地区，误导公众的，不予注册并禁止使用；但是，已经善意取得注册的继续有效。  前款所称地理标志，是指标示某商品来源于某地区，该商品的特定质量、信誉或者其他特征，主要由该地区的自然因素或者人文因素所决定的标志。  **第十七条** 外国人或者外国企业在中国申请商标注册的，应当按其所属国和中华人民共和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办理，或者按对等原则办理。  **第十八条** 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可以自行办理，也可以委托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办理。  外国人或者外国企业在中国申请商标注册和办理其他商标事宜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办理。  **第十九条** 商标代理机构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被代理人的委托办理商标注册申请或者其他商标事宜；对在代理过程中知悉的被代理人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委托人申请注册的商标可能存在本法规定不得注册情形的，商标代理机构应当明确告知委托人。  商标代理机构知道或者应当知道委托人申请注册的商标属于本法第十五条和第三十二条规定情形的，不得接受其委托。  商标代理机构除对其代理服务申请商标注册外，不得申请注册其他商标。  **第二十条** 商标代理行业组织应当按照章程规定，严格执行吸纳会员的条件，对违反行业自律规范的会员实行惩戒。商标代理行业组织对其吸纳的会员和对会员的惩戒情况，应当及时向社会公布。  **第二十一条** 商标国际注册遵循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有关国际条约确立的制度，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第二章 商标注册的申请**  **第二十二条** 商标注册申请人应当按规定的商品分类表填报使用商标的商品类别和商品名称，提出注册申请。  商标注册申请人可以通过一份申请就多个类别的商品申请注册同一商标。  商标注册申请等有关文件，可以以书面方式或者数据电文方式提出。  **第二十三条** 注册商标需要在核定使用范围之外的商品上取得商标专用权的，应当另行提出注册申请。  **第二十四条** 注册商标需要改变其标志的，应当重新提出注册申请。  **第二十五条** 商标注册申请人自其商标在外国第一次提出商标注册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商品以同一商标提出商标注册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依照前款要求优先权的，应当在提出商标注册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商标注册申请文件的副本；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商标注册申请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优先权。  **第二十六条** 商标在中国政府主办的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展出的商品上首次使用的，自该商品展出之日起六个月内，该商标的注册申请人可以享有优先权。  依照前款要求优先权的，应当在提出商标注册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展出其商品的展览会名称、在展出商品上使用该商标的证据、展出日期等证明文件；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证明文件的，视为未要求优先权。  **第二十七条** 为申请商标注册所申报的事项和所提供的材料应当真实、准确、完整。  **第三章 商标注册的审查和核准**  **第二十八条** 对申请注册的商标，商标局应当自收到商标注册申请文件之日起九个月内审查完毕，符合本法有关规定的，予以初步审定公告。  **第二十九条** 在审查过程中，商标局认为商标注册申请内容需要说明或者修正的，可以要求申请人做出说明或者修正。申请人未做出说明或者修正的，不影响商标局做出审查决定。  **第三十条** 申请注册的商标，凡不符合本法有关规定或者同他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已经注册的或者初步审定的商标相同或者近似的，由商标局驳回申请，不予公告。  **第三十一条** 两个或者两个以上的商标注册申请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以相同或者近似的商标申请注册的，初步审定并公告申请在先的商标；同一天申请的，初步审定并公告使用在先的商标，驳回其他人的申请，不予公告。  **第三十二条** 申请商标注册不得损害他人现有的在先权利，也不得以不正当手段抢先注册他人已经使用并有一定影响的商标。  **第三十三条** 对初步审定公告的商标，自公告之日起三个月内，在先权利人、利害关系人认为违反本法第十三条第二款和第三款、第十五条、第十六条第一款、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的，或者任何人认为违反本法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规定的，可以向商标局提出异议。公告期满无异议的，予以核准注册，发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  **第三十四条** 对驳回申请、不予公告的商标，商标局应当书面通知商标注册申请人。商标注册申请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第三十五条** 对初步审定公告的商标提出异议的，商标局应当听取异议人和被异议人陈述事实和理由，经调查核实后，自公告期满之日起十二个月内做出是否准予注册的决定，并书面通知异议人和被异议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六个月。  商标局做出准予注册决定的，发给商标注册证，并予公告。异议人不服的，可以依照本法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的规定向商标评审委员会请求宣告该注册商标无效。  商标局做出不予注册决定，被异议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做出复审决定，并书面通知异议人和被异议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六个月。被异议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异议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商标评审委员会在依照前款规定进行复审的过程中，所涉及的在先权利的确定必须以人民法院正在审理或者行政机关正在处理的另一案件的结果为依据的，可以中止审查。中止原因消除后，应当恢复审查程序。  **第三十六条** 法定期限届满，当事人对商标局做出的驳回申请决定、不予注册决定不申请复审或者对商标评审委员会做出的复审决定不向人民法院起诉的，驳回申请决定、不予注册决定或者复审决定生效。  经审查异议不成立而准予注册的商标，商标注册申请人取得商标专用权的时间自初步审定公告三个月期满之日起计算。自该商标公告期满之日起至准予注册决定做出前，对他人在同一种或者类似商品上使用与该商标相同或者近似的标志的行为不具有追溯力；但是，因该使用人的恶意给商标注册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第三十七条** 对商标注册申请和商标复审申请应当及时进行审查。  **第三十八条** 商标注册申请人或者注册人发现商标申请文件或者注册文件有明显错误的，可以申请更正。商标局依法在其职权范围内作出更正，并通知当事人。  前款所称更正错误不涉及商标申请文件或者注册文件的实质性内容。  **第四章 注册商标的续展、变更、转让和使用许可**  **第三十九条** 注册商标的有效期为十年，自核准注册之日起计算。  **第四十条** 注册商标有效期满，需要继续使用的，商标注册人应当在期满前十二个月内按照规定办理续展手续；在此期间未能办理的，可以给予六个月的宽展期。每次续展注册的有效期为十年，自该商标上一届有效期满次日起计算。期满未办理续展手续的，注销其注册商标。  商标局应当对续展注册的商标予以公告。  **第四十一条** 注册商标需要变更注册人的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应当提出变更申请。  **第四十二条** 转让注册商标的，转让人和受让人应当签订转让协议，并共同向商标局提出申请。受让人应当保证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质量。  转让注册商标的，商标注册人对其在同一种商品上注册的近似的商标，或者在类似商品上注册的相同或者近似的商标，应当一并转让。  对容易导致混淆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转让，商标局不予核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转让注册商标经核准后，予以公告。受让人自公告之日起享有商标专用权。  **第四十三条** 商标注册人可以通过签订商标使用许可合同，许可他人使用其注册商标。许可人应当监督被许可人使用其注册商标的商品质量。被许可人应当保证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质量。  经许可使用他人注册商标的，必须在使用该注册商标的商品上标明被许可人的名称和商品产地。  许可他人使用其注册商标的，许可人应当将其商标使用许可报商标局备案，由商标局公告。商标使用许可未经备案不得对抗善意第三人。  **第五章 注册商标的无效宣告**  **第四十四条** 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规定的，或者是以欺骗手段或者其他不正当手段取得注册的，由商标局宣告该注册商标无效；其他单位或者个人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该注册商标无效。  商标局做出宣告注册商标无效的决定，应当书面通知当事人。当事人对商标局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其他单位或者个人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注册商标无效的，商标评审委员会收到申请后，应当书面通知有关当事人，并限期提出答辩。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维持注册商标或者宣告注册商标无效的裁定，并书面通知当事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商标裁定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第四十五条** 已经注册的商标，违反本法第十三条第二款和第三款、第十五条、第十六条第一款、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的，自商标注册之日起五年内，在先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请求商标评审委员会宣告该注册商标无效。对恶意注册的，驰名商标所有人不受五年的时间限制。  商标评审委员会收到宣告注册商标无效的申请后，应当书面通知有关当事人，并限期提出答辩。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做出维持注册商标或者宣告注册商标无效的裁定，并书面通知当事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六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裁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商标裁定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商标评审委员会在依照前款规定对无效宣告请求进行审查的过程中，所涉及的在先权利的确定必须以人民法院正在审理或者行政机关正在处理的另一案件的结果为依据的，可以中止审查。中止原因消除后，应当恢复审查程序。  **第四十六条** 法定期限届满，当事人对商标局宣告注册商标无效的决定不申请复审或者对商标评审委员会的复审决定、维持注册商标或者宣告注册商标无效的裁定不向人民法院起诉的，商标局的决定或者商标评审委员会的复审决定、裁定生效。  **第四十七条** 依照本法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的规定宣告无效的注册商标，由商标局予以公告，该注册商标专用权视为自始即不存在。  宣告注册商标无效的决定或者裁定，对宣告无效前人民法院做出并已执行的商标侵权案件的判决、裁定、调解书和工商行政管理部门做出并已执行的商标侵权案件的处理决定以及已经履行的商标转让或者使用许可合同不具有追溯力。但是，因商标注册人的恶意给他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依照前款规定不返还商标侵权赔偿金、商标转让费、商标使用费，明显违反公平原则的，应当全部或者部分返还。  **第六章 商标使用的管理**  **第四十八条** 本法所称商标的使用，是指将商标用于商品、商品包装或者容器以及商品交易文书上，或者将商标用于广告宣传、展览以及其他商业活动中，用于识别商品来源的行为。  **第四十九条** 商标注册人在使用注册商标的过程中，自行改变注册商标、注册人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期满不改正的，由商标局撤销其注册商标。  注册商标成为其核定使用的商品的通用名称或者没有正当理由连续三年不使用的，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商标局申请撤销该注册商标。商标局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决定。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  **第五十条** 注册商标被撤销、被宣告无效或者期满不再续展的，自撤销、宣告无效或者注销之日起一年内，商标局对与该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标注册申请，不予核准。  **第五十一条** 违反本法第六条规定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申请注册，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处违法经营额百分之二十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  **第五十二条** 将未注册商标冒充注册商标使用的，或者使用未注册商标违反本法第十条规定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制止，限期改正，并可以予以通报，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处违法经营额百分之二十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处一万元以下的罚款。  **第五十三条** 违反本法第十四条第五款规定的，由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罚款。  **第五十四条** 对商标局撤销或者不予撤销注册商标的决定，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商标评审委员会申请复审。商标评审委员会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九个月内做出决定，并书面通知当事人。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长三个月。当事人对商标评审委员会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十日内向人民法院起诉。  **第五十五条** 法定期限届满，当事人对商标局做出的撤销注册商标的决定不申请复审或者对商标评审委员会做出的复审决定不向人民法院起诉的，撤销注册商标的决定、复审决定生效。  被撤销的注册商标，由商标局予以公告，该注册商标专用权自公告之日起终止。  **第七章 注册商标专用权的保护**  **第五十六条** 注册商标的专用权，以核准注册的商标和核定使用的商品为限。  **第五十七条** 有下列行为之一的，均属侵犯注册商标专用权：  （一）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的；  （二）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近似的商标，或者在类似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的商标，容易导致混淆的；  （三）销售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的；  （四）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的；  （五）未经商标注册人同意，更换其注册商标并将该更换商标的商品又投入市场的；  （六）故意为侵犯他人商标专用权行为提供便利条件，帮助他人实施侵犯商标专用权行为的；  （七）给他人的注册商标专用权造成其他损害的。  **第五十八条** 将他人注册商标、未注册的驰名商标作为企业名称中的字号使用，误导公众，构成不正当竞争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处理。  **第五十九条** 注册商标中含有的本商品的通用名称、图形、型号，或者直接表示商品的质量、主要原料、功能、用途、重量、数量及其他特点，或者含有的地名，注册商标专用权人无权禁止他人正当使用。  三维标志注册商标中含有的商品自身的性质产生的形状、为获得技术效果而需有的商品形状或者使商品具有实质性价值的形状，注册商标专用权人无权禁止他人正当使用。  商标注册人申请商标注册前，他人已经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先于商标注册人使用与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并有一定影响的商标的，注册商标专用权人无权禁止该使用人在原使用范围内继续使用该商标，但可以要求其附加适当区别标识。  **第六十条** 有本法第五十七条所列侵犯注册商标专用权行为之一，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工商行政管理部门处理。  工商行政管理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责令立即停止侵权行为，没收、销毁侵权商品和主要用于制造侵权商品、伪造注册商标标识的工具，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处违法经营额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对五年内实施两次以上商标侵权行为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应当从重处罚。销售不知道是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并说明提供者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  对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的争议，当事人可以请求进行处理的工商行政管理部门调解，也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经工商行政管理部门调解，当事人未达成协议或者调解书生效后不履行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第六十一条** 对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工商行政管理部门有权依法查处；涉嫌犯罪的，应当及时移送司法机关依法处理。  **第六十二条**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有关的情况；  （二）查阅、复制当事人与侵权活动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三）对当事人涉嫌从事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四）检查与侵权活动有关的物品；对有证据证明是侵犯他人注册商标专用权的物品，可以查封或者扣押。  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在查处商标侵权案件过程中，对商标权属存在争议或者权利人同时向人民法院提起商标侵权诉讼的，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中止案件的查处。中止原因消除后，应当恢复或者终结案件查处程序。  **第六十三条** 侵犯商标专用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确定的，可以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商标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三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力举证，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判定赔偿数额。  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注册商标许可使用费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三百万元以下的赔偿。  **第六十四条** 注册商标专用权人请求赔偿，被控侵权人以注册商标专用权人未使用注册商标提出抗辩的，人民法院可以要求注册商标专用权人提供此前三年内实际使用该注册商标的证据。注册商标专用权人不能证明此前三年内实际使用过该注册商标，也不能证明因侵权行为受到其他损失的，被控侵权人不承担赔偿责任。  销售不知道是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并说明提供者的，不承担赔偿责任。  **第六十五条** 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其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依法在起诉前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停止有关行为和财产保全的措施。  **第六十六条** 为制止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商标注册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依法在起诉前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第六十七条** 未经商标注册人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销售明知是假冒注册商标的商品，构成犯罪的，除赔偿被侵权人的损失外，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八条** 商标代理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办理商标事宜过程中，伪造、变造或者使用伪造、变造的法律文件、印章、签名的；  （二）以诋毁其他商标代理机构等手段招徕商标代理业务或者以其他不正当手段扰乱商标代理市场秩序的；  （三）违反本法第十九条第三款、第四款规定的。  商标代理机构有前款规定行为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记入信用档案；情节严重的，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并可以决定停止受理其办理商标代理业务，予以公告。  商标代理机构违反诚实信用原则，侵害委托人合法利益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并由商标代理行业组织按照章程规定予以惩戒。  **第六十九条** 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必须秉公执法，廉洁自律，忠于职守，文明服务。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以及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不得从事商标代理业务和商品生产经营活动。  **第七十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对负责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执行法律、行政法规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监督检查。  **第七十一条** 从事商标注册、管理和复审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违法办理商标注册、管理和复审事项，收受当事人财物，牟取不正当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八章 附 则**  **第七十二条** 申请商标注册和办理其他商标事宜的，应当缴纳费用，具体收费标准另定。  **第七十三条** 本法自1983年3月1日起施行。1963年4月10日国务院公布的《商标管理条例》同时废止；其他有关商标管理的规定，凡与本法抵触的，同时失效。  本法施行前已经注册的商标继续有效。 |